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종합감사 -

2023.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주의)	.....	3
2.	입주기업 운영·관리 부적정	(시정)	.....	6
3.	직원 숙소 관리 부적정	(시정)	.....	8
4.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제안서(규격서) 평가 결과 공개 부적정	(주의)	.....	10
5.	건축 설계공모 업무추진 부적정	(주의)	.....	12
6.	○○○○ ◎◎ ◆◆◆◆◆◆◆◆ 건축공사비 과다 계상	(시정)	.....	14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기관에서는 0000년도 ◇◇◇◇ ◇◇◇◇ ★★ ○○○○ 및 ▼▼▼▼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을 입찰 공고하였다.

위 기관 「회계규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법인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7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관련 예규 등을 준용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1.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제5장-제2절-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히 정량평가는 세부항목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량적 평가 전체 배점한도(20점)의 30%(6점)을 초과하는 10점을 부여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3배수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제5장-제2절-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 ◎◎◎ ★★ ○○○○ 및 ▼▼▼▼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에 대해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

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앞으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배점기준을 준수하는 등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입주기업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입주기업 운영·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 「입주기업 운영·관리 통합지침」 제17조에는 법인은 입주계약서상의 계약 면적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부과하고 입주자가 임대료·관리비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납부 기한 익일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지침 제19조에는 관리비는 1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 말일까지 법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별표3]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 관리기준」에는 연체 기간에 따라 미납금의 5%에서 20%를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내도록 되어 있고, 「입주기업 운영·관리 통합지침」 제23조에는 법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관리비 등의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강제 퇴거 결정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입주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한 기업에 연체료를 부과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 관리기준에 따라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입주기업이 납부 기한 내에 임대료·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 관리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입주기업에 연체료를 가산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되어야 할 연체료 00건 000,000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미납된 연체료 000,000원은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징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직원 숙소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서는 ○○○○  
○으로부터 관사 0호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 「직원 숙소 관리지침」 제4조에는 법인은 필요한 경우 주택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할 수 있고 같은 지침 제5조에는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원 숙소를 위해 임차할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민법에서 정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통해 그 변제의 선순위 권리를 득하여 전세 보증금의 불완전  
회수를 방지하고 기관의 안전한 자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부동산(직원 숙소용 아파트)을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고, 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0000.00.00. ○○○○으로부터 부동산(직원 숙소용 아  
파트)를 00,000,000원(0개실 각 00,000,000원)을 계약한 뒤, 0000.00.00. ○○○○에  
재계약 임대보증금 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부동산 권리에 대해

여 등기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직원이 입주 또는 퇴거하는 상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직원 숙소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숙소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지급된 부동산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직원 숙소 아파트등기를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제안서(규격서)평가결과 공개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 ★★★ ○○○ ○ 구매 등 00건’을 붙임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과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연구원 「회계규정」 제7장 계약 제173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2단계 입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거나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에 따라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계약 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관련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 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구매 2단계 입찰계약의 경우에도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제4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연구원에서는 '☆☆☆ ★★★ ○○○○ 구매 등 00건'에 대한 물품 구매계약(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계약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제안서 및 규격서의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연구원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지 않고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 ★★★ ○○○○ 구매 등 00건'의 계약이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제안서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 설계공모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장(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공모의 신청 접수기한은 공고일부터 최소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모안의 제출 마감 기한은 최소 90일 이상(해당사업 특성이나 시급성을 감안 필요시 45일 이상 기간으로 단축 가능)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설계공모의 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표]의 설계공모 공고현황과 같이 「○○○○○○○○ ◎◎◎◎◎◎ ◇◇◇◇◇◇ 건립공사」의 설계공모를 추진함에 있어 공모참가 신청접수 기한을 3일로 축소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다.

[표] 설계공모 공고현황

(단위 : 백만원)

설계 공모명	공고일	접수 기한	공모안 제출기한	결과발표	공고 기간	제출 기간	비고
운영지침 기준	-	-	-	-	7	90 (45)	
○○○○○○○○ ◎◎◎◎◎ ◇◇◇◇◇◇ 건립공사	'00.00.00.	'00.00.00.	'00.00.00.	'00.00.00.	3	46	

그 결과 ‘○○○○○○○○ ○○○○ ◇◇◇◇◇◇ 건립공사’ 설계공모의 진행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어 진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과 ○○○○는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제 목 ○○○○ ◎◎ ◆◆◆◆◆◆◆◆ 건축공사비 과다 계상

소 관 청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0000.00.00. 주식회사 △△△(대표 ◎◎◎)과 ○○○○ ◎◎ ◆◆◆◆◆◆◆◆ 건립공사 계약(금액 : 0,000백만원)을 맺고, 0000.00.00. 착공하여 0000.00.0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 ○○○○○○ 건립공사는 사업비 00억 원, 연면적 0,000㎡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사업이며 초급품질기술자 1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는 시험관리인에 해당되므로 ‘○○○○ ◎◎ ◆◆◆◆◆◆◆◆’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품질활동비를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품질활동비 경비항목에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이 이중계상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장은**

-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과다계상된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포함)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관련자 ○○○과 ◇◇◇는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